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
----------	----

제출년월일 : 2000. 8. 23.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정화조청소 대행업자의 부적합 정화조에 대한 신고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상위 법령에 근거없는 정화조청소 수수료할증 조항을 폐지하여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정화조청소 대행업자의 부적합 정화조에 대한 신고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6조 제1항)
 - ▷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 파손되었음을 발견한 경우로 명확히 함
- 나.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정화조청소 수수료할증 조항을 삭제함(안 제8조 제2항)

3. 관계법령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비정상가동 정화조등에 대한 신고)의 제목중 “비정상가동”을 “부적합”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본문중 “대행업자는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비정상가동 또는 청소를하여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화조”를 “대행업자는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파손된 정화조”로 하며, 동조 제2항 본문중 “법 제9조, 법 제9조의2, 법 제10조, 법 제14조, 법 제14조의2 및 제28조”를 “법제9조·제10조·제14조·제14조의2·제28조”로 한다.

제8조(수수료 부과징수)중 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2(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6조(비정상가동 정화조등에 대한 신고) ① <u>대행업자는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비정상가동 또는 청소를 하여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화조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소재지, 내용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즉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지체없이 현장을 조사한 후 <u>법 제9조, 법 제9조의2, 법 제10조, 법 제14조, 법 제14조의2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설의 설치신고, 내부청소, 시설의 개선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u></p>	<p>제6조(부적합 정화조등에 신고) ① <u>대행업자는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파손된 정화조</u>----- ----- ----- ----- -----.</p> <p>② ----- -----<u>법 제9조·제10조·제14조·제14조의2·제28조</u>----- ----- ----- -----.</p>
<p>제8조(수수료부과 징수) ① <u>분뇨의 수집, 운반과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수수료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u></p> <p>② <u>제3조 제4항에 의거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정화조에 대한 수수료는 제1항에서 정한 정화조 청소수수료에 별표2의 합중요금을 가산한다. 다만, 제3조 제3항에 의거 구청장이 지역별 청소에서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③ ~ ④ (생략)</p>	<p>제8조(수수료부과 징수) ① ----- ----- -----.</p> <p><u><삭 제></u></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별표2]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수수료(제8조 관련)

구 분	부과기준	수수료	적 용 기 준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10ℓ	29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광역시분뇨처리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 분뇨처리비가 포함된 금액임 ◦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정화조청소 수수료	기본(0.75㎡이하)	16,2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광역시분뇨처리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 분뇨처리비가 포함된 금액임 ◦ 청소된 오니(오수포함)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 ◦ 요금계산시 100원 미만은 버린다
	초과(0.1㎡당)	1,170원	